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02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정희용·고동진·김선교

박충권 • 박준태 • 유용원

주호영 • 백종헌 • 최수진

김기현 • 박덕흠 • 강명구

박정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어,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도 긴급상황 시 초기대응에 투입될 수 있음.

최근 산불 진화 수단으로서 무인비행장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소방용 또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사전승인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신속한 현장 투입에 제약이 있음.

이에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1항 중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을 "군용·경찰용·세관용·소방용 또는 산림감시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u>군용·경찰용 또는</u>	특례) ① <u>군용·경찰용·세관용</u>		
<u>세관용</u>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소방용 또는 산림감시용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